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51103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배은서

피 고 1.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변 론 종 결 2021. 2. 25.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 B는 연대하여 6,295,219원과 그 중 5,588,117원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2020. 5. 25.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는 101,707,7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2020. 5. 25.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와 연대하여 위 나.항의 돈 중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2021. 5. 27.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9.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9. 10. 14. 접수 제359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는 원고에게 주문 제1. 나.항의 돈 중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주문 제1의 가, 나.항,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신용보증계약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채권자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1	D은행	2015-06-30	E	4,000만 원	2020-06-29	피고 B
2	F은행	2018-08-28	G	1억 원	2021-08-27	

2) 피고 B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약정서와 책임경영이행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그 사본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고 서명까지 하였다.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의뢰인에 대한 책임경영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신용보증의뢰인 : (주) 농업회사법인 A
2. 보증약정 : 년 월 일자 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한도거래용)
3. 신용보증원금(한도금액) : 금 일억 원
4. 신용보증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2조(책임경영의무 등) 약정인은 제1조의 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6. 제6조에서 정하는 부수의무의 준수

제4조(책임경영의무위반과 보증금액 회수) ① 약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1조의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금액의 잔액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재단에서 제2조 책임경영의무 위반 사실과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수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 약정인에게 도달하면 약정인은 즉시 회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부수의무) ① 약정인은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겠으며 관련 자료와 장부 열람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합니다.

②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주주현황, 경영진변동, 재무자료 등의 경영현황 관련 자료를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3) 원고는 2020. 3. 26. 피고 B에게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6조에 따라 책임경영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소명을 구하는 내용의 소명신청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2조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원에 관하여 책임경영의무 미이행에 따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됨을 통지하면서 약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 B는 이에 대하여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에 근거하여 D은행과 F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 11. 28.경 아래 순번 1번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0. 3. 23. 아래 기재 각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들에게 각 대위변제를 하였다.

순번	보증채권자	신용보증사고발생일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
1	D은행	2020-01-09	2020-03-23	5,588,117

2	F은행	2019-11-28	2020-03-23	101,707,772
합계				107,295,889

2) 이후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으나 707,102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원고의 약정 연체이율은 2018. 2. 1.부터 연 10%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1) 피고 B는 2017.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9. 10. 1.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같은 달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9. 11. 20. 피고 B의 H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여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 반해 소극재산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억 8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순번	채 권 자	발 생 일 자	금 액	비 고
1	I은행	2018-06-21	3,420만 원	지급보증담보대출
2	I은행	2014-08-14	4,000만 원	신용대출
3	기업은행	2015-07-13	2억 2,830만 원	보증채무
4	J은행	2019-06-21	1억 원	보증채무
5	원 고	2015-06-30	5,833,000	보증채무
합계			408,333,00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6,295,219원(대위변제금 5,588,117원 + 채권보존비용 707,10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5,588,11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5. 25.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대신에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한 사실, 원고가 그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6조에 따라 피고 B에게 책임경영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소명을 구하였음에도 이를 소명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2조 제6호의 책임경영의무 미이행으로 위 약정서 제4조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상에 보증약정 및 신용보증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피고 B의 책임경영이행 의무기간이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6조의 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서 신용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21. 8. 27.로 정하였고, 피고 B는 보증약정서와 책임경영이행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듣고 그 사본을 수령한 다음 이를 확인하고 서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만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하였고 그 외에 추가로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 B의 책임경영이행 의무기간은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보증기한인 2021. 8. 27.까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책임경영이행 의무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 및 책임경영이행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대위변제금 101,707,772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5. 25.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중 보증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1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7.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B의 책임경영의무 미이행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확정적으로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된 것은 대위변제일인 2020. 3. 26.이나, 그 이전에 피고 B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실제로 D은행 및 F은행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인) 피고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피고 B의 재산상태와 채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C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항변 요지

피고 C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키워 준 계모인 피고 B의 사업상 어려움으로 결혼자금 1억 2,15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이후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대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거기에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가 계모자 관계에 있었던 피고 B에게 결혼자금 1억 2,150만 원을 대여해 주어야 할 정도로 피고 B가 사업상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피고 C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그 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이상 (비록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

별지

목 록

1. 경기도 포천시 대 571㎡

2. 경기도 포천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포천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36.62㎡

3. 경기도 포천시 도로 712㎡

(공유자 지분 712분의 77.06)

- 끝 -

